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사항	관계부서
<농지제도개선> ○시장,군수 농지전용 허가 위입범위 확대	○시장,군수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3만㎡ 미만으로 확대	농지법시행령 제72조	농지과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중 행정기관에서 직접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등본, 임야도 등본, 지형도를 구비서류에서 제외 ○농지전용 변경허가시 구비서류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 ○시군구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농지과
○친환경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 자재중에 다수의 농가가 사용하고 있어 세제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의 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 농가부담완화	신설 (05.1.1)	친환경 농업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비료대 지원제외	○조사료작물재배를 위한 화학비료대 지원 제외 - 가축분뇨 퇴,액비사용 등 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하여 조사료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배료대 지원 중단	축산법 제3조	축산 경영과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 신철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05.2.1)	축산물 위생과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및 위반자 규제강화

(농림부 가축방역과)

- 농림부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05년부터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육우는 가축시장거래 및 도축이 제한되며,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을 60%만 지급합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확대시행

-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대상 소를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최소 2주전에 해당 시,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검사신청.

○검사증명서 미휴대 소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제한이 제한되며,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처분
*시행시기 : '05.1월부터(1-2개월 계도기간 후 3월부터 의무시행)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함.
*시행시기 :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05년 상반기 시행예정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감염 의심소 등 도태권고 가축에 대한 도태장력금을 시가지급

-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 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 도태장력금을 현실화 함.
*시행시기 : 현재 규제심사 협의요청중이며, '05년 상반기 시행예정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절차 간소화

(농림부 농촌사회과)

- 농림부는 농어민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용자해주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신청시 제출하는 6종의 서류를 대폭 감축하여 신청서 1장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적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변경 후 : 용자신청서

*용자신청서류는 용자금 집행 위탁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G4C등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

- 아울러 금년도에는 600억원의 용자재원으로 입학금과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한 학자금 전액을 2월과 8월 학기초에 조기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폐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을 통해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에 따른 결손을 정부에서 보전해 왔던 화학비료 판매차손보전 제도를 2005년 7월1일부터 폐지합니다.
- 동 제도는 1991년부터 원자재가격폭등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 그동안 화학비료가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으나, 비료 과다시비로 인한 농업환경의 오염과 친환경농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손보전을 감축하여 왔습니다.
- 정부는 동 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유기질, 퇴비비료 보조를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지침

1. 목 적

-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 산업 경쟁력제고
-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1등급이상) 생산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계의 활성화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사업량(천두)		318	158	17	61
사 업 비	계	51,156	22,892	4,092	8,476
	보조	42,886	20,603	4,092	8,476
	지방비	8,270	2,289	-	-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급대상

- 생산자단체를 통해 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거세우를 출하하여 1**A, 1**B, 1*A, 1*B, 1A, 1B 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대상에서 제외)

○생산자 단체의 범위

- 지역 농·축협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시·도지사 및 등급판정소장 포함)으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

※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한우협회 시·군 지부 등

나. 지급장소 및 금액

○포상금지급장소 : 지역축협 및 농협

○지급기간 : 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금액(두당/천원) :

(한우) 1**A, 1**B, 1*A, 1*B 등급 : 200, 1A, 1B등급 : 100

(육우) 1**A, 1**B, 1*A, 1*B, 1A, 1B등급 : 100

다.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품질고급화 장려금	60,510두	8,476	8,476	8,476	-	-	-

추진체계

가.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4)

나. 사업시행기관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34)